

예산총칙

200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49,325,467	10,479,764
일반회계	314,255,422	9,427,663
특별회계	35,070,045	1,052,101
기타특별회계	35,070,045	1,052,101
상수도사업	2,182,044	65,461
하수도사업	1,610,858	48,326
수질개선	5,306,420	159,193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56,697	13,701
의료급여기금	535,411	16,062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69,824	17,095
기반시설	321,327	9,640
소득특화사업	5,986,293	179,589
농공단지조성사업	2,666,479	79,994
공영개발사업	4,884,658	146,540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550,034	316,501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282,034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다

제 4 조 2009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9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로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